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11월 27일  
복지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11월 15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  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3년 11월 27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(2023. 3. 28. 개정, 2023. 9. 29. 시행) 개정  
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
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지원대상(안 제4조)
- 지원방법 및 내용(안 제5조)
- 업무의 대행(안 제6조)
- 점검 및 비용환수(안 제7조 및 제8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#### 1) 제정 이유
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서 위임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

#### 2) 조례 경과 사항

- 조례 제정 : 2017. 5. 15  
(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)
- 조례 폐지 : 2019. 5. 19  
(2018년 3월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가 제정되어 구 조례의 존치 필요성 상실: 운영·지원 내용 등 동일)

#### 3) 주요 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  -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 규정
  -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
- 지원대상(안 제4조)
  - 금천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
- 지원방법 및 내용(안 제5조)
  - 지원 내용 : 영치실 안치료, 봉안대상자의 공고 비용 등
- 업무의 대행(안 제6조)
  -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장례업체,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#### 4) 시·구 조례의 비교(동일<유사> 여부)

구 분	요 약 내 용		비 고
	시 조 례	구 조 례	
목 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장례지원 및 빈소마련</li> <li>◦ 고인의 존엄성, 공동체의식</li> <li>◦ 사회복지 가치 실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장례지원에 필요사항</li> <li>◦ 고인의 존엄성 유지</li> </ul>	유사함
지원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사망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</li> <li>◦ 무연고 사망자,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장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</li> <li>◦ 마을장례, <u>시장·구청장이 장례지원 필요시</u></li> <li>◦ 아동학대 사망자로 연고자의 장례 능력부재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무연고 사망자</li> <li>◦ 수급자가 관외에서 사망한 경우</li> <li>◦ <u>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</u></li> </ul>	
지원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<u>현물지원 원칙</u>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금지원</li> <li>◦ 매장비용 지원안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지원방법 : 없음</li> </ul>	
지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장례절차, 인력, 물품, 장소, 차량 또는 서비스지원</li> <li>◦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한 지원</li> <li>◦ 사망자 봉안시설 개방</li> <li>◦ 지원수준은 시장이 정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영안실 안치료, 봉안대상자 공고비</li> <li>◦ 관외 사망자 운구비</li> </ul>	
지원신청 및 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지원신청 : 없음</li> <li>◦ 업무 대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장례업체, 민간기관, 비영리단체</li> </ul> </li> </ul>	
관리, 점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장례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사</li> <li>◦ 지원목적에 맞게 지원되었는지 조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장례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 점검</li> </ul>	유사 동일함
환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부정하게 지원받은 경우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부정하게 지원받거나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</li> </ul>	유사 동일함

## 다. 검토의견

- 상위법령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(2023. 3. 28)의 개정 에 따라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지원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.
- 무연고 사망자에게 공공의 지원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책무를 수행함과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  
다만, 조례 제정과 폐지를 거듭한 사례가 있으므로 주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 등의 세심한 행정 운영이 필요하다 사료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생략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